수원광교 공공실버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모집공고일 : 2026.11.11.]

[신청접수기간 : 2026.11.23.~2026.11.25.]

청약신청 관련 유의사항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 '19.9.27.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 시 동일유형(영구임대, 국민임대, 통합공공임대)의 모집공고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상실 처리됩니다.
- 단, 예비입주자 선정은 ①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상실 처리됩니다.
- 예비입주자가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모든 공공임대주택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의 모집공고일은 2026. 11. 11.(수)이며, 수원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1961.11.11. 이전 출생자)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신청 가능합니다**(5쪽, 3.신청자격 참조)

□ 제출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11.11.)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현장접수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청약 신청 후 타지역 전출, 주택소유**(분양권 및 입주권 등)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 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자격 해당 여부, 배점 적용은 공급신청자 본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 현재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합니다.

□ 신청접수는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하고, **지정된 일자에 신청자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만 가능**합니다.

□ 주택의 임대차 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재계약** 할 수 있습니다.

문 의 처

■ **수원광교 공공실버주택 임대센터(평일 09:00 ~ 18:00), 거주지동 행정복지센터**

- 연락처 : 031-548-4741
-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150번길 55, 수원광교 공공실버상가 1층 101호

□ 전화문의는 장시간 접속지연 및 통화대기 등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 입주자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가급적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차 례

1. 공급개요 ····· 3p

2. 공급계획 및 임대조건 ····· 4p

3. 신청자격 ····· 5p

4. 입주자 선정방법 ····· 7p

5.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 8p

6. 당첨자 발표 및 계약안내 ····· 10p

7.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 ····· 12p

8.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 및 자산 산정방법 ····· 13p

9. 참고사항 ····· 16p

10. 유의사항 ····· 16p

■ 공사양식[붙임1~5] ····· 21p

경기주택도시공사
GYEONGGI HOUSING &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

1 공급개요

▌수원광교 공공실버 사업지구 개요

구 분	내 용	위 치 도
위 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150번길 55	
최초입주	2019년 4월	
아파트명	수원광교 공공실버	
건축규모	지하 1층, 지상 10층, 1개동(총 152세대)	
공급유형	영구임대주택	
주 택 형	**22, 26A, 26B, 26C**	

※ 이 주택은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건설하여 장기간 임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으로 분양전환 되지 않으며, 입주자격 충족 시 최초 임대개시일(2019년 4월)로부터 **최장 50년간 거주 가능**합니다.

▌공급일정

모집공고일	신청접수기간	신청 및 서류접수	입주대상자 발표	계약체결
2026.11.11.(수)	**2026.11.23.(월)** **~ 2026.11.25.(수)** (10:00~17:00)	(수원시)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2027.2.24.(수)** **17:00 이후**	추후 개별 통보

- 신청은 **신청자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만 가능**하며, 동일 공고에서는 **중복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정확한 신청접수를 위하여 현장접수 시 **신청자 본인의 제출서류를 모두 지참하여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발표와 계약체결 일정은 자격검증 기간 등 소요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체결 및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통보합니다.**

▌공급대상자 및 입주자격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3.신청자격] 부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11.11.) 현재** 수원시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 영구임대주택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2026년 기준)

- 입주 신분별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70% 이하**
- 자산기준 : 총자산가액 **24,5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하**

▫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한 주택소유 여부 확인 및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 및 자산을 조회합니다.

※ 상세 공급일정, 임대조건, 신청자격 등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공급계획 및 임대조건

■ 주택형별 공급계획

공급형별	세대수	세대 당 계약면적(㎡)					호수		해당동	구조 및 난방	입주예정
		주거전용	주거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합계	당첨자	예비자			
				기타공용	주차장						
22형	16	22.03	13.39	10.03	10.24	55.69	-	10	101	철근 콘크리트 지역난방	개별통보
26형	136	26.21~26.32	15.71~16.14	11.93~11.98	12.18~12.23	66.08~66.47	-	30			

-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 공간으로 새시 설치에 따라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 모집공고일 이후 기 계약 세대의 계약 해지 등으로 인한 공가 발생에 따라 공급호수가 변경될 수 있으며, 공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가를 포함하여 호수 추첨을 진행합니다.
- ▫ 예비자로 선정된 사람은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공가 발생) 시 예비자 순번에 따라 계약을 체결합니다.
-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 동호추첨은 무작위 전산추첨으로만 이루어집니다. 공공주택 특성상 층간소음, 생활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사유로 동호변경은 불가능하며,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동호교환도 불가능합니다.

■ 임대조건(26.11월 3.17% 적용 기준, 전환당시 정기예금 이율 적용예정, 매월 이율 변경)

공급형별	적용구분	임대보증금(원)			월임대료(원)	전환가능보증금 한도액(원)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원)	
		계	계약금(10%)	잔금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22	「가」군	2,193,000	219,000	1,974,000	43,690	(+)6,000,000	8,193,000	계약당시 정기예금 이율에 따름
						(-)1,000,000	1,193,000	
	「나」군	15,923,000	1,590,000	14,333,000	124,120	(+)28,000,000	43,923,000	
						(-)12,000,000	3,923,000	
26	「가」군	2,610,000	261,000	2,349,000	51,990	(+)7,000,000	9,610,000	
						(-)1,000,000	1,610,000	
	「나」군	18,884,000	1,880,000	17,004,000	146,400	(+)33,000,000	51,884,000	
						(-)14,000,000	4,884,000	

「가」군 해당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나목에 해당하는 자 ① **가목**(생계·의료급여수급자) ② **나목**(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나」군 해당자	「가」군 해당자 이외에 영구임대에 입주 가능한 자

- ▫ **계약금(임대보증금의 10%)은 계약 시, 잔금은 입주 시 완납하여야 합니다.**
-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2026.11.11.)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전환 당시의 정기예금이율을 적용**하며 **해당 정기예금이율은 월단위로 산정하여 적용되며, 향후 계약 시에는 변경된 전환이율을 적용하여 임대조건(임대보증금, 월임대료)을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3 신청자격

▌공통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1.11.) 현재 수원시에 거주하는 만65세이상(1961.11.11. 이전 출생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소득·자산, 자동차 보유 기준, 기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 자격 해당 여부, 배점 적용은 공급신청자 본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 다음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세대원 전원이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 아래의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당첨 후 주택소유(분양권 및 입주권 등)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 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무주택** :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분양권등 :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 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은 제외)

※ 분양권,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7.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	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단,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외국인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 배우자의 자격검증이 불가능한 사람의 경우 신청 불가 -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이 되어 있지 않는 외국인 - 주민등록말소자, 거주불명자 외
외국인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제외	

- 세대구성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단, 임대주택에 기 거주중인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분리 하더라도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능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소득, 자산, 자동차 보유기준,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확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공급 순위(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1호)

순위		내 용
신청 자격 (만65세 이상)	1순위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2순위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3)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6) 종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 또는 그 유족
	3순위	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70%, 2명인 경우에는 60%)이하인 자로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소득·자산산정 방법은[8.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 및 자산 산정방법] 참고

구분: 소득

1. 신분별 입주소득 기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 월평균 소득 70%이하(1인 90%, 2인 80%) : 나목(국가유공자등)
- 월평균 소득 50%이하(1인 70%, 2인 60%) : 차목(일반입주자)

2.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가구원수	월평균소득 50% (1인 70%, 2인 60%)	월평균소득 70% (1인 90%, 2인 80%)
1인가구	2,669,354원 이하 (70% 적용금액)	3,432,027원 이하 (90% 적용금액)
2인가구	3,519,762원 이하 (60% 적용금액)	4,693,016원 이하 (80% 적용금액)
3인가구	4,084,215원 이하	5,717,900원 이하
4인가구	4,401,101원 이하	6,161,541원 이하
5인가구	4,663,493원 이하	6,528,890원 이하
6인가구	4,953,132원 이하	6,934,384원 이하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 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100% 기준 579,278원)에 해당 소득기준 비율(50% 또는 70%)을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에 속한 자(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임신 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자산		
	적용대상	나목(국가유공자 등), 차목(일반입주자) 등
	총자산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총자산가액**(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부채반영), 일반자산) **합산기준 (24,500)만원 이하**
	자동차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중 최고가 4,542만원 이하** **** 자동차가액은 총자산가액에 포함되나, 총자산가액 평가와 별도로 추가 검증함**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생계·의료수급자)의 경우 관련 신분 증빙자료 제출하면 소득자산 검증이 생략됩니다.

4 입주자 선정방법

▌배점기준표

구 분		배 점
1. 연령배점 - 50점 (고령자)	만85세 이상	50
	만80세 이상~만85세 미만	40
	만75세 이상~만80세 미만	30
	만70세 이상~만75세 미만	20
	만65세 이상~만70세 미만	10
2. 단독세대주 - 50점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세대주	50

▌동일순위 내 경쟁 시 입주자 선정 순서

입주자 선정순서						
배점합산	❯	전입일자가 오래된 자	❯	단독세대주	❯	추첨

▌입주자격 검증

-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일정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주택 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 자격검증 기간 : 서류제출 후 입주자격 검증에 약 2~3개월 소요되며, 국토교통부 및 보건복지부 시스템 처리기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부적격자 소명 : 부적격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이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으며,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소명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소명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에서 제외됩니다.

5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현장접수 *접수 전 거주 지역의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바랍니다.

□ 신청/접수일자 : 2026. 11. 23. (월) ~ 2026. 11. 25. (수) 10:00~17:00

□ 신청/접수장소 : **(수원시)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 정확한 신청접수를 위하여 현장접수 시 신청자 본인의 제출서류를 모두 지참하여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류

□ 제출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11.11.)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현장접수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되므로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에도 당첨자 자격을 취소하오니 부적격 당첨에 따른 당첨 취소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

※ 일부 서류는 해당기관에서 발급 시 일정기간이 소요되므로 이를 감안하여 관련 서류 사전 발급 요망

□ **기본 제출서류**

	구비서류	비 고	부수
공통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 **대상자 : 임대주택 신청자**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홈페이지에 게재된 모집공고에서 인쇄하여 사용 가능)	**붙임1**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 **대상자 : 임대주택 신청자** • **(작성방법)** 공고시에 첨부된 확인서에 **신청자**가 서명 또는 날인 ※ (주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붙임2**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대상자 : 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전원)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동의방법)**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정자로 작성(사인, 도장 불가)**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 및 접수 불가**	**붙임3**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붙임4**
	주민등록표등본 (전부표기) *신청자기준 발급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1통 추가 제출(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예비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추가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1통
	주민등록표초본 (전부표기) *신청자기준 발급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토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신청자 포함)**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1통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로 발급) *신청자기준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 등(ex 동거인) 무주택세대구성원 확인 필요한 경우 •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외의 사람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세대원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등 사본 추가	1통
대상자	**신청자격 증명서**	<해당자만 제출> • **행정기관 등이 발행하는 증명서(아래 참고)**	해당기관
	기타서류	<해당자만 제출> • **추가 증빙이 필요한 경우 해당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격 관련 증명서**(해당자만 제출)

대상자	제출서류	발급처
생계·의료급여 등 수급자	수급자증명서	행정복지센터
국가유공자 등	국가유공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특수임무유공자 확인원, 참전유공자 확인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확인서	국가보훈부

□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본인 직접 제출할 때	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확인되는 여권만 인정) 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신청자) 도장 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기타 대리인이 신청할 때	① (인감증명방식)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본인(신청자)의 인감도장 ② (본인서명방식)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③ 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주민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신형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입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 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명의자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금융정보 제공 사실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이 발생하지만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서명 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 통보를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6 당첨자 발표 및 계약안내

※ 당첨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우리 공사 공급담당부서 또는 수원광교 공공실버주택 임대센터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 또는 임대센터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주택의 동·호는 신청 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형별 구분 없이 추첨하며, 당첨자 명단은 GH공사 홈페이지(http://gh.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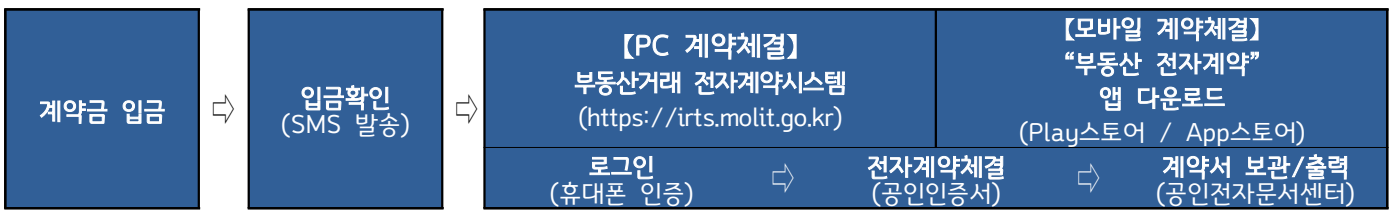
▌당첨자 발표 [2027.2.24.(수) 17:00 이후]

- 확인방법 : GH홈페이지(https://gh.or.kr) 내 분양/임대 공고 게시 및 신청시 작성된 휴대폰으로 개별 안내 예정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을 체결합니다.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 당첨자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미계약으로 인한 당첨취소 등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 하며 소명이 불가능한 경우 당첨자격이 취소됩니다.

▌전자계약 안내 : 공가 발생 시 개별 안내

- 계약금은 계약 전 안내되는 계좌로 납부 가능합니다.
- 계약금 입금 후 전자 계약기간 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https://irts.molit.go.kr)'에서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개인별 가상계좌 및 계약관련 상세 안내)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하오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우리 공사로 변동사항을 통보해야 합니다.
-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전자계약 체결 절차 】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 전자계약 기간 내 평일 업무시간(09:00~18:00)중 계약금 입금 후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계약체결준비 전송안내까지는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우리 공사에서 계약금 입금을 확인한 후 계약서를 개별 전송하며, 계약금 입금 여부는 따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 「전자계약 체결(전자서명)」은 전자계약 기간 내 상시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전자계약 체결 시 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고, 임대계약 종료 시까지 열람·출력, 저장 가능합니다.

※ 전자계약 체결 업무 진행에 따라 기타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당첨자에게 별도 통지 예정입니다.

▌현장계약 안내

□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현장계약이 가능합니다.

□ 현장계약시 계약인원이 몰릴 경우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가급적 인터넷을 이용하여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계약을 희망하는 당첨자는 계약금 입금 후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계약장소는 추후 계약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공통서류(본인 + 대리인 계약 시 모두 지참)	대리 계약시 추가서류
• 계약금 입금증 또는 입금사실 확인 가능한 정리된 통장 • 계약자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만 인정)	• 배우자는 '공통서류'와 신분증, 계약자와 관계입증서류를 추가로 제출 •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위임장**(공사양식 붙임5) : '인감증명서 상의 인감도장 날인' 또는 '신청자 자필 서명' • 계약자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또는 계약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신형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7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53조)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의 상속·증여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G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 **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최초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단,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동일 세대원에게 증여한 경우 제외)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⑪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 제1항 제2호 · 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8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 및 자산 산정방법

▌소득 및 자산 확인방법

□ 소득·자산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입니다.

□ 소득 및 자산액은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처리합니다.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입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소득 및 자산 산정방법(「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구분		산정방법
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총자산	부동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의 소유자와 농업인확인서 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산지로서 소유자와 농업확인서 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받는 경우.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금융자산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 조사일부터 과거 3개월 간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조사일 기준의 계좌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펀드, 선물옵션 등 : 조사일 기준의 최종 시세가액 *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조사일 기준의 액면가액 ● 연금저축: 조사일 기준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조사일 기준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조사일 기준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기타자산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합계 금액에서 차감)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마이너스통장대출, 신용카드 연체대금 등의 경우 부채 인정불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가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 소득·재산 항목 설명 및 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 근로복지공단 월평균보수액 (1) 산재보험, (2) 고용보험 - 국민연금공단 기준소득월액 - 장애인고용공단자료(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 국세청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사업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간호수당,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의료지원금은 제외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국가보훈부 보훈대상자명예수당, 국가보훈부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총자산	일반 자산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지방세정 자료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국토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선박·항공기	-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 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지방세정 자료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금융자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 금융정보 조회결과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금액 합계에서 차감)		금융기관 대출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임대보증금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9 참고사항

▌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 사업주체

구분	사업주체(등록번호)	주소	법인등록번호
사업주체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타운로 43	130171-0000052

10 유의사항

관련항목	유의사항
임대대상 및 조건	• 이 주택은 영구임대주택으로서 분양전환 되지 않는 주택입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가능기간은 최초 임대개시일(2019년 4월)로부터 50년까지입니다. • 현재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합니다. • 갱신계약 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자격상실 및 소득수준 등에 따른 관련법령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할증되며 일정소득수준 이상인 경우에는 퇴거**될 수 있습니다. •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임대료는 일정 범위내에서 상호전환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계약시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현장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고,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 공용면적입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새시 설치에 따라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당해 주택 입주자는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 자산보유 등 강화된 입주자격 및 재계약 기준이 적용되므로 총자산 또는 자동차가 입주기준 불충족 시 재계약이 거절됩니다.
신청자격	•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릅니다. •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신청자격, 소득, 총자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 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공급방법	• 신청접수는 지정된 일자에 현장접수만 가능합니다.
신청서류	•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신청은 본인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 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 및 본인 인감도장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입주대상자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선정한 입주대상자로서 입주 전에 입주자 선정당시의 자격이 소멸된 자(타지

결정 및 계약안내	역 전출, 유주택 등)는 입주대상자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알코올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장기간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하고, 이로 인해 원활한 단지내 공동체 생활의 영위가 극히 곤란한 자의 경우 입주대상자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 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복입주 금지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할 때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중복 입주하고 있는 주택 중 어느 한쪽의 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 공급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 됩니다. 다만,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구성원이 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계약 또는 입주 전 세대 분리를 하는 경우 중복입주로 보지 않아 본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 ※ 단, 배우자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자동차 등록 관련	• 임대주택 단지 내에서는 임차인 등*의 소유차량(임차인 전용 리스차량 및 근무회사 차량 포함) 이외 타인소유의 차량은 주차할 수 없습니다. * 임차인 등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및 그 임차인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주민등록법상의 세대 구성을 말함)하여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을 말함 • 국토교통부 고시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일정 가액(2026년의 경우 4,542만원, 자동차가액은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조회 가능하며 개인별 차량가액은 조회금액과 다를 수 있음)을 초과하는 차량의 단지 내 차량등록은 허용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입주일은 해당 주택의 열쇠교부일이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을 입주일로 봅니다. • 입주시 잔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 및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계약금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대출받으실 수 있으며,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외부에 설치되는 자재(제품)는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 및 시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단지는 GH가 입주민을 위한 주거생활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해당 주거생활서비스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주민공동시설이나 부대복리시설 등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지구 및 단지 여건	**※ 지구 및 단지여건 사항은 초기입주공고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금번 입주모집일 기준의 현황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지구 여건 • 전파음영지역 해소를 위한 이동통신용 중계기가 각 동 옥상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여건 • 지구계획(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 각 시설 설치계획, 각종 영향평가) 및 인허가 변경, 현장여건 변경 등은 사업추진과정 중에 조정될 수 있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부지 반경 3km 이내에는 광교중앙역(신분당선), 광교역(신분당선), 상현역(신분당선), 경기대학교 수원캠퍼스, 아주대학교, 아주대학교병원(병원 및 장례식장 등),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등이 있습니다.
- 북측으로는 20미터(4차선 이상)도로, 동측으로는 21미터(4차선 이상)도로, 서측으로는 13미터(2차선 이상)도로와 연접하고 있어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부지 인근에 도시개발사업이 진행중에 있어 개발사업으로 인한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사업지 서측에 위치하고 있는 교회로 인해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방문차량으로 혼잡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여건

- 세대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 또는 소음으로 인한 불편의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부지 현장 및 주변여건 등을 사전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동절기 등 외기와 실내 간 온도차가 클 때에는 발코니 창, 벽, 천장 등에 실내외 온도 차이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시로 창을 열어 실내공기를 환기하여 결로를 예방하시기 바라며, 특히 빨래 건조, 가습기 사용 등으로 습기가 많을 시에 주의해야 합니다.
- 단지 여건상 이사용 사다리차 접근이 불가능하여 이삿짐 운반시 승강기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 분리수거함 및 음식쓰레기 수거함, 옥외쓰레기 수거함 설치로 인해 인접 세대의 경우 냄새 및 해충, 소음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 하부에 부대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시설과 지역편의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이용자들로 인해 소음 및 사생활 침해 등 생활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건축물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별 위치에 따라 승강기, 각종기계, 환기설비 등의 설비 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승강기는 기계실 없는 타입(MRL)으로 구조상 메인패널이 최상층에 위치하여 기계 작동음 등의 소음이 상층부에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승강로 인접세대는 승강기 운행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내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저층 세대는 야간의 보안등 불빛으로 인하여 불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옥상에는 방송공동수신용 안테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각 세대에 통합단자함이 현관 또는 거실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붙박이 가구 하부 및 뒷면에는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세대 싱크대 하부장에 온수분배기 설치로 실제 사용공간이 다소 협소할 수 있으며, 난방 가동시 온수 분배기에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는 비난방구역으로 발코니에 설치된 수전류, 배수배관, 배수트랩(Trap) 등은 겨울철 동결 및 동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측벽세대의 경우 동절기 등 외기와 실내 간 온도차가 클 때, 충분한 환기를 하지 않을 경우 측벽에 설치된 배선기구에서 결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세대 경계벽 및 세대내 실간 벽체 내부에는 전력선, 통신선 및 설비배관(급수, 온수 등)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벽체에 못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 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단지 환경 및 건축물 외관 디자인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색상 및 문양 등은 현 시공 상태로 임대 예정입니다.
- 세대내 주방가구 하부에는 시공 선후관계상 주방가구가 먼저 설치되어야 하므로 바닥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상가가 설치·운영되는 지상1층 일부에는 단지 외부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합니다.
- 복도 및 전용면적 천장 내부가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 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 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기, 통신, 지역냉난방, 가스 공급을 위한 시설물의 규모와 위치, 각종 맨홀 등의 인입 위치, 드라이창(급기, 배기용) 위치와 크기, 우오수 배관의 위치 및 우수용 선홈통의 위치와 개수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 및 외부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므로, 추후 변경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하자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보상은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다만, 입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제반 훼손 부분은 입주자의 비용으로 유지, 보수하여야 합니다.
- 추후 공공주택 사업자가 지정하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호실 시설물에 대한 관리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며, 입주여부와 상관없이 일반 관리비 및 호실 관리비(전기, 수도, 가스 등 포함)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공공주택 사업자는 제 법규에 따라 사용승인을 득한 이후 법개정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수원광교 공공실버(영구임대)주택은 총 152세대로 구성된 도시형생활주택이며, 비주거용도(상가 등)가 포함된 복합건축물입니다.
- 복도에 새시가 설치되나 별도의 단열은 시공치 않습니다. 또한 세대내 창호와 달리 완전히 밀폐된 창호가 아니기 때문에 외부 환경에 따라 일시적으로 바람소리가 들리거나 누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상1층에 위치한 상가는 임대가 완료되어,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입점하였으며, 소음도 및 생활 불편사항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상1층~지상2층에 설치된 지역편의시설은 관할 관청 협의에 따라 타 용도로 변경할 수 있으며, 단지 내 입주민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주차대수는 총 47대이며, 일반주차 27(상가주차장 3대 포함)대, 장애인 2대, 확장형 14대, 경형 4대로 구분되어 설치되어 있습니다.
- 주차대수는 법정주차대수에 맞춰 설치하였으나 부족할 수 있습니다. 상가 주차장은 총 3대이며 지하주차장 경사로 우측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은 입주자 및 지역편의시설 이용자가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함에 따라 생활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옥상에는 옥상텃밭, 지상2층 공용공간에는 개별창고, 계절옷장 및 세탁실이 계획되어 있으며, 이 시설들은 모두 입주민을 위한 주민공동시설입니다.
- 옥상에 텃밭이 조성되어 입주민들의 이동으로 인하여 최상층 세대에는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난방 방식은 지역난방이며, 세대별 적산열량계, 급수계량기, 전기계량기는 원격검침 방식입니다.
- 쓰레기 분리수거장은 대지 여건 및 수원시 규정에 따라 단지출입구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옥상텃밭의 작물 및 비료 등은 이용하는 세대가 직접 구입하여 재배하여야 하며, 공용시설로 제공되는 일부 시설물외 관련 장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또한 텃밭의 관리는 각 세대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며 별도의 관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텃밭 및 화단 관리시 사용하는 상·하수 등은 공용시설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관리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전기 공급을 위한 한전 전기 공급시설(개폐기함, 변압기함)이 화단부근의 지상에 설치되어 일부 세대에서 보일 수 있습니다.
- 입주민의 안전을 위해 옥상출입문에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고, 출입구에는 CCTV가 설치됩니다.
- 지상1층 로비에는 무인택배가 설치되어 운영됩니다.
- 에어컨 실외기는 각 세대 발코니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밖의 장소에는 설치 불가합니다. 다만, 부대 복리시설에 대한 에어컨 실외기는 지상2층 옥상에 설치합니다.
- 복도에 세대별 급수 및 급탕계량기 설치로 점검구가 설치됩니다.
- 거실/침실 발코니에 설치된 환기설비 및 배관으로 인해 내부 미관 저해요소가 있으며, 발코니 배수 배관으로 인한 배수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발코니에 우수관이 설치되어 있어 우천시 소음이 날 수 있습니다.
- 세대로 인입되는 각종 배관들에 의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감재 및 발코니 등

- 발코니창호(단창)가 설치되는 외벽은 겨울철 내·외부 온도차에 따른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가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1회 부과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입주일은 해당 주택의 열쇠교부일이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

	는 그 종료일 다음날을 입주일로 봅니다.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2026. 11. 11.

경기주택도시공사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접수번호

신청주택	단지명	**수원광교공공실버 영구임대**	전용면적	☐ **22㎡형** ☐ **26㎡형**	가구원수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단독세대주	☐ 단독세대 ☐ 기타세대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 집 전 화( ) -		수원시 전입일	년 월 일	

1순위	☐ 생계급여 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 ☐ 의료급여 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3호)
2순위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80퍼센트) 이하이고, 제13조제3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 또는 그 유족
3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70%, 2명인 경우에는 60%)이하인 자로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신청인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자산, 세대구성원 중 입주자격제한자(불법양도·전대) 없음]에 해당함을 ☐서약하며,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신청 이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에 해당하지 않음이 판명되는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또는 해제될 수 있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공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대리신청시 기재 **********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배우자** ☐**기타대리인**		. .	- -

신청의사 확인업무를 위해 대리인 본인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수집·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와 같이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귀하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확인자 (임차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본인(또는 배우자)은 **수원광교공공실버 영구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함에** 있어 해당 단지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시 **기존에 선정되어 있던 동일한 유형**(영구임대) **단지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됨**을 충분히 인지하고 신청함을 확인합니다.

※ 참고사항

단, 기존 예비입주자의 기준은 입주자모집 공고일이며,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청약 접수일, 당첨자 발표일 순으로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됨

20 년 월 일

확 인 자
(임 차 인) (서명 또는 인)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5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권한 위임받은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48조의6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자의 자격확인을 위하여 개인정보 등을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의7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 관리, 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사람의 성명, 생년월일, 청약자와의 관계, 서명 또는 날인

성명	생년월일	관계	서명	성명	생년월일	관계	서명
		본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배우자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2. [필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안내

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자 및 수집 목적 :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구분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기본	- 주민등록사항(성명, 주소, 거주시작일, 신청인과의 관계) - 병역사항(행복주택 공급 시 남성에게만 해당) - 연락처(유·무선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 주택소유 및 공공임대주택 계약·입주내역
소득	-「소득세법」 제12조,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소득내역 - 공적연금 가입내역 - 건강보험 가입내역 -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각종 급여, 수당 및 직불금내역 - 국세 및 지방세 과세내역 - 사업자등록사항
자산	- 토지·주택·건축물 및 자동차 보유내역
기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여부

다.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5년, [계약자] 영구**

라. 위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인(공급신청자를 말하며, 위 1호에 기재된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본인의 개인정보를 본인으로부터 직접 제공받거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미동의 ☐

3. [필수] 민감정보 수집·이용 안내

가. 민감정보 수집·이용 목적 :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장애인 해당여부, 장애유형·정도, 태아의 수**

다.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계약자] 5년**

라. 정보주체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우선공급 대상 "장애인 등"에서 제외되고, 장애인 관련 배점 적용대상 및 편의시설 설치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위 사무를 위하여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미동의 ☐

4. [필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안내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항목, 보유·이용기간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항목	보유·이용기간
국토교통부	주택소유여부 검색, 주거급여 계좌정보조회	성명, 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각 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보유
소득·재산·주택·공공임대 주택 계약 및 입주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주택, 소득 및 자산, 계약 및 입주 여부 검색	성명, 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사회보장정보원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성명, 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우정사업본부	전자우편서비스를 통한 임대료 고지서 및 각종 안내문 발송	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 및 임대료 부과내역, 입주자격 검증내역	

나.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미동의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 및 제공 안내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1항제2호, 제2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수집·이용·제공)합니다.

- 수집·이용 안내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보유·이용기간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신청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6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5년, [계약자] 영구

- 제공 안내

제공받는 자	제공 근거	이용목적	제공항목	보유·이용기간
국토교통부	「공공주택특별법」 제48조의4(공공주택 지원 신청자의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제출), 5(금융정보등의 제공), 6(자료요청), 7(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6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주택소유여부 검색, 주거급여 계좌정보조회	신청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각 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보유
소득·재산·주택·공공임대 주택 계약 및 입주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주택, 소득 및 자산, 계약 및 입주 여부 검색		
사회보장정보원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20 . .

경기주택도시공사 귀하

붙임4 금융정보등(금융정보·신용정보·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2. 12. 29.> [앞면]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 공공주택 신청자 인적사항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신청자		-
주 소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세대원 등)

신청자와의 관 계	동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1] (서명 또는 인)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것에 동의함[2] (서명 또는 인)
		-		
		-		
		-		
		-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등이 신청자 본인, 배우자, 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등의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데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송부하게 됩니다).

3.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 뒷면 참조

4.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 : 제출일부터 6개월

5. 정보제공 목적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 지원

□□□□년 □□월 □□일

금융기관장·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면]

금융기관 등의 명칭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금융정보 등의 범위

1. 금융정보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 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납입금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합니다.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2. 신용정보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나.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3. 보험정보
 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나.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유의사항

1. 공공주택의 공급을 신청(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해제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2. 이 동의서는 최초로 공공주택의 공급을 신청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되며, 앞면에서 "유효기간"이란 동의서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정보등을 조회한다는 의미입니다. 향후, 재계약을 체결할 때 동의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사업주체는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나, 동의 대상자가 추가된 경우에는 추가된 동의 대상자에 대한 동의서면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동의자의 금융정보등은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재계약 시 자격확인을 위한 금융재산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위 임 장

□ 주택의 표시 : 수원광교공공실버 영구임대주택

위 표시 임대주택의 임대차 신청에 관하여 위임자는 수임자에게 임대 신청 및 계약 업무의 일체를 위임하고 추후 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위임자와 수임자가 책임지고 해결하겠으며, 귀 공사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위 임 자(신청자)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 연락처)

수 임 자(대리인)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 연락처)

경기주택도시공사 귀하

붙 임 : 위임자(신청자) 인감증명서(본인 발급분)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